학부모위원 선출 공고(보궐)

전주온고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온고을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입후보 등록

가. 자격: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🅯 국가공무원법 제33조[결격사유]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나. 접수기간: 2025년 3월 10일 ~ 3월 11일까지(9:00~16:00), 【2일간】
- 다. 접수장소: 전주온고을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- 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통 (행정실 비치, 학교홈페이지 탑재)

2. 위원선거

- 가. 선거일시: 2025년 3월 20일 19:00~19:30
- 나. 선거장소: 전주온고을중학교 강당
- 다. 선거방법: 직접투표, 【가정통신 앱(e-알리미) 병행】
- 라. 학부모위원 정수: 3명(임기 1년: 2025년 4월 1일 ~ 2026년 3월 31일, 잔여기간에 한함)
- 마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(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)
- 바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5년 3월 17일 ~ 3월 19일, 행정실
- 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5년 3월 10일

전주온고을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